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169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A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1. 접수 제7482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부탁을 받아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부터 받을 대출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1	D	2013. 12. 20.	91,800,000원	2014. 12. 19. (이후 2020. 2. 14.로 최종 변경)
2	E	2014. 2. 19.	102,000,000원	2015. 2. 17. (이후 2020. 2. 14.로 최종 변경)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12. 20. 108,000,000원을, 2014. 2. 19. 12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받았는데, 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2019. 11. 14.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4. 1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변제일자	대위변제 원금	대위변제 이자	합계
1	D	2020. 4. 14.	74,800,000원	1,562,372원	76,362,372원
2	E	2020. 4. 14.	102,000,000원	2,716,570원	104,716,570원
합계					181,078,942원

3)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181,078,942원, 추가보증료 628,720원, 법적절차비용 1,226,139원 등 합계 182,933,8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는 2019. 5. 20.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정하여 각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1. 접수 제74820호로 피고 명의 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5. 20.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2019. 11. 14.로부터 6개월여 전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8. 8. 8. 간이회생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2019. 11. 14. 발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약 5개월 뒤인 2020. 4. 14.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사후구상금 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의 B에 대한 182,933,801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10~14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641,000,000원 상당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645,101,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62,08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B는 그와 같은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B의 배우자이자 수익자인 피고 또한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는, B에게 그가 경영하던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19년 5월초 34,211,54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로 2019.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진정한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당시 B는 원고로부터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소외 회사의 4대 보험료 등이 완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4대 보험료 등을 완납한 후 원고의 보증기간 연장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B에게 채권자를 해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B의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9. 5. 7. 소외 회사의 4대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하여 합계 34,211,540원이 해당 징수기관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B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와 B와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나 소외 회사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2019. 5. 7. B에게 위 돈 34,211,540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5. 2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의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최승준